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이나 세목명칭이 『농지세』로 되어 있어 세목명칭과 조세성격이 맞지 않는 점이 있고, 농지세 과세대상도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벼와 과수·채소류 등으로 되어 있어 수경재배·시설재배 등은 같은 농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면서도 국세인 『소득세』가 과세되어 조세 불형평의 문제점이 있으며, 취약한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을 위하여 국세가 과세되는 시설재배¹⁵⁾·수경재배¹⁶⁾ 등은 농지세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1차산업 소득인 축산·산림·어업소득 등도 농지세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농지세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조세로 지방세중 유일한 소득과세이며, '62년 지방세로 이양 당시에는 지방세중 38.2%를 차지하는 중요세원이었으나, 농민생활 안정 및 농업지원정책의 일환으로 '91년까지 280만원이던 기초공제액을 '92년부터 56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점진적인 농업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방세중 비중이 가장 낮고(0.023%), 농지세 납세농가도 전체농가(1,480천호)의 1.5%인 21천호로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농지세를 명실공히 지방세중 소득세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 우선 소득세 과세 대상인 수경재배 등 시설작물 재배소득을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이전하면서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개칭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축산·산림·어업소득의 지방세 흡수문제도 계속 검토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다.

2) 개정개요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였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¹⁷⁾에 해당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였다. 지

15) 시설재배라 함은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시설, 공장형 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16) 수경재배라 함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물과 양분을 토양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양분을 적당한 비율로 물에 용해시킨 배양액을 만들어 산소와 함께 공급하면서 재배하는 방법. 주요재배작물로는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 상추, 쑥갓 등 잎채소류, 화훼류 등 다양하다.